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협의회와 기능과 역할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협의회와 기능과 역할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재정립 (안 제3조)
-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해촉을 군수가 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관·단체”를 “법 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기관·단체”로, “공동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을 “공동 추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내 범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전단 중 “협의회”를 “부위원장은 영동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기관·단체 간 공동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p> <p>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p> <p>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신 설></p>	<p>제3조(기능 및 역할) ----- -----.</p> <p>1. 법 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기관·단체 --- 공동 추진 사업-----</p> <p>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p> <p>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p> <p>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4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협의회 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부위원장은 영동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협의회 ----- -----.</p> <p><삭 제></p>

<p>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경찰서장, 영동소방서장이 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p>1. ~ 3. (생 략)</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 군수가 위촉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촉 해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6조(위촉 해제) 군수----- ----- -----.</p> <p>1. ~ 4. (현행과 같음)</p>